

「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」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8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사회복지국장 황은채

나. 제안이유

-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 등 보행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없는 도시 환경 조성 중요성 인식 증대
- 보행약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발굴 및 기본설계 적정성 협의 업무를 적정 운영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사무명: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

○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사업지원)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의회 동의)

○ 위탁사무

- 사업발굴 및 현장조사

○ 위탁기간 :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 *2025. 1. ~ 2027. 12.(3년)

○ 소요예산 : 462,720천원 (연간 154,240천원 정도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

- 신청자격 : 보행약자 이동증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(단체)
- 평가내용 :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- 평가방법 :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○ 적정성 검토 : 적정 ※ 2024년 제4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○ 부서의견(필요성)

- 장애없는 환경 조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로 장애인 단체 등 보행환경 개선 민원이 증가되고 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 시스템 구축 필요

⇒ 전 부서 사업 추진 시 BF인증 등급 ‘우수’ ~ ‘최우수’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사전 협의 시스템(안) 구축 중

- 이에 따라, 보행약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설계를 위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사무를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받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서울특별시, 창원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의 개선과 안전 취약지역 파악을 위해 1년 이내의 실태조사를 추진한 후 정비대상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였고, 구미시의 경우에도 2019년도 아동 통학로 보행환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실태 파악 후 통학로를 정비한 바 있어 다른 사무방식으로 충분히 사무 수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할 계획임에도 비용추계의 운영비에 4백만 원의 교육 및 홍보비가 책정되고, 위탁사무에 시설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공공요금과 수용비로 26백만 원이 책정된 점 등 사무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.
- 집행기관은 경제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과 다른 사무방식으로 추진하였을 때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나, 사업발굴과 현장조사 사무를 추진하는 방식에 대하여 민간위탁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집행기관의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